

< 일 러 두 기 >

- 법령명 : 입국 과일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 개정발표일 : 2026년 04월 27일
- 시행일 : 2026년 11월 01일
- 발표기관 : 해관총서
- 출처 : 해관총서 (방문일 : 2026년 6월 18일)

※ 원문 출처 “해관총서, 일부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해관총서령 제283호)”
공고 내 첨부파일 1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6-04/28/article_2026042811190688024.html)

입국 과일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제1조 입국 과일의 검역성 유해 생물과 유독·유해 물질 확산 방지, 중국 농업 생산과 생태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국 입국 신선과일 (이하 '과일') 에 대한 검사검역과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해관총서는 중국 전역의 입국 과일의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주관 해관은 해당 관할 구역 내 입국 과일의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과일의 휴대 및 우편 배송 입국을 금지하며, 법률·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제5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입국 과일 무역 계약 혹은 협정 체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해관에 입국 과일 검역 심사비준 절차를 신청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 검역허가증' (이하 '검역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제6조 수출 국가 또는 지역 관할 검사검역 부문이 발급한 식물검역증(이하 '식물검역증')(원본)은 검사 신청 시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식물검역증은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식물검역증 내용과 양식은 국제식물검역조치 기준 ISPM 제12호 '식물검역증 준칙' 요구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2) 컨테이너로 운송하여 입국하는 경우 식물검역증에 컨테이너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3) 중국과 협정(협의, 의정서, 양해각서 등 포함, 이하 동일)을 이미 체결한 경우 관련 협정 중 관련 식물검역증에 관한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제8조 입국 과일은 해관 감독관리 조건에 부합하는 국경출입구를 통해 입국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9조 해관은 이하 규정에 근거하여 입국 과일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 (1) 중국 유관 검사검역의 법률·법규, 표준 및 관련 규정
- (2) 중국 정부와 수출 국가 혹은 지역 정부가 체결한 양자 협정
- (3) 해관총서와 수출 국가 혹은 지역 검사검역 부문이 체결한 의정서
- (4) '검역허가증'에 나열된 관련 요구사항

제10조 입국 과일은 하기 검사검역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1) 식물검역증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과일을 혼적하거나 함께 반입해서는 안 된다.
- (2) 포장 박스에 중문 혹은 영문으로 과일 명칭, 산지, 포장공장 명칭과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 (3) 중국 입국 금지 검역성 유해 생물, 흙, 나뭇가지, 잎 등 식물 잔재가 없어야 한다.
- (4) 유독·유해 물질 검출량이 중국 관련 안전위생 표준의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5) 수출 국가 혹은 지역과 중국이 협정 혹은 의정서를 체결한 경우 협정 혹은 의정서 관련 조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제11조 해관은 관련 작업 절차와 표준에 따라 입국 과일에 대해 현장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 (1) 화물과 증명서의 일치 여부
- (2) 본 방법 제7조와 제10조의 요구에 따른 식물검역증과 포장 상자 위 정보 및 공식 검역 마크 대조
- (3) 과일에 벌레, 병해, 가지·잎, 흙, 해충 등의 피해 흔적 여부 확인
현장 검역에서 의심되는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 검역 검정 실시
- (4) 관련 규정과 표준에 따라 견본을 채취하여 실험실 검사 실시

제12조 해관은 관련 작업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험실 검사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 혹은 실험실 검역 중 벌레, 병균, 잡초 등 유해 생물을 발견할 경우 검증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채취한 샘플에 대해 유독·유해 물질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검역 결과서를 발급한다.

제13조 검사검역 결과에 따라 해관은 입국 과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1) 검사검역에 합격한 경우, 입국 화물 검사검역증을 발급하고 통관을 허용한다.
- (2) 검역성 유해생물 혹은 기타 검역이 필요한 유해생물이 발견된 경우, 제해처리를 실시해야 하고, 검사검역 처리통지서를 발급한다. 제해처리 결과 적합한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 (3) 본 방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거나, 화물과 증명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혹은 검사검역에 불합격하였으나 효과적인 제해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검역 처리통지서를 발급하고 해관의 감독 하에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한다.

대외 배상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검사검역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4조 입국 과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관총서는 상황에 따라 해당 과일의 수입을 중단하거나 관련 과일의 산지, 과수원, 포장공장으로부터의 수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1) 수입 과일 과수원, 가공공장 혹은 주변 지역에 심각한 식물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 (2) 검사검역 과정에서 중국 측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입국 검역성 유해생물이 발견된 경우
- (3) 검사검역 과정에서 유독·유해 물질 함량이 중국의 관련 안전위생 표준 규정을 초과한 경우
- (4) 중국 관련 검사검역 법률·법규, 양자협정 혹은 관련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전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과일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관총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이하 '홍콩, 마카오 지역')를 경유하여 입국한 과일은 컨테이너로 운송해야 하며 원래의 컨테이너, 원래의 포장 및 원래의 식물검역증에 따라 입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해관총서의 동의를 받아 항공운송 방식으로 입국 과일을 경유 운송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포장 및 원래의 식물검역증에 따라 입국해야 한다.

제16조 해관총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출 국가 혹은 지역 정부 검사검역 기관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 해관 직원을 생산지에 파견하여 사전검사, 선적감독 또는 산지 전염병 발생 상황과 화학품 사용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검사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입국 과일은 임의로 이동, 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과학연구, 증정, 전시 등 특수 용도로 국가가 입국을 금지한 과일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주 혹은 대리인은 사전에 해관총서 또는 해관총서가 권한을 위임한 해관에 특수 검역 심사비준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입국 시에는 입국 국경출입구 해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전시용 과일에 대해서는 전시 기간 동안 해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며, 해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이동, 판매,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시 종료 후에는 해관의 감독 하에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해관총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21조 본 방법은 200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이 1999년 12월 9일 공포한 「입국 과일 검역 관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